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구생산업 등 신고 시 수리 관련 규정 삭제〉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330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어구생산업 등 신고 시 수리 관련 규정 삭제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출 일 : 2024. 11. 7.
3. 회 부 일 : 2024. 1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등).

Ⅲ. 검토의견

1. 어구생산업 등 신고 시 수리 관련 규정 삭제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제4항 삭제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② (생략)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삭제>

<u>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이하 “어구생산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u>제1항 및 제2항</u>----- ----- ----- ----- ----- -----.
---	--

나. 검토의견

□ 신고는 사인이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통상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되며, 신고의 실질적 내용과 성격에 따라 법률의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¹⁾

-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²⁾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말하고,

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5. p.338 이하

2)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기본법」 제34조³⁾에서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신고의 효력은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발생함.

□ 현행 「수산업법」 제71조는 어구생산업⁴⁾ 및 어구판매업⁵⁾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창업·영업과정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⁶⁾,

그 일환으로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적은 분야는 행정청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법령 정비의 취지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현재

3)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4)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영업

5) 어구를 판매(수입하여 유통·공급하는 것을 포함함)하는 영업

6) 국정1-3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영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어구
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수리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해당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려는 것임.

- 정부는 소상공인 등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에서
특정 영업의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신고로서 법령에
인력·시설·장비 등 신고를 위한 실체적 요건 규정이 없는 경우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는 어구의
생산과 판매 현황 등 관련 영업의 운영 실태를 확인·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법률에도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실체적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정비 요건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에서도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 정비를 통한 실제적인 기간상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영업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정부(법제처) 법령정비계획

*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계획’(법제처)에서 발췌

I. 추진 배경 및 정비 방향

□ 추진 배경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 등 추진 일환

* **국정1-3**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 **민생토론회10-1-④**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법령 정비 관련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 외에도
경영하기 좋은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 중요

2024. 2. 8.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10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중략)...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하여...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생활규제 개선

- 창업·영업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절차(자기완결적 신고 확대)**, **기준(시설·장비 기준 완화)**, **의무(교육부담 완화)**에 대한 개선 추진

□ 정비 방향

- **(자기완결적 신고 확대)**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자기 완결적 신고로 전환하여 영업자의 추가적 부담 완화
- **(보수교육 부담 완화)** 영업자나 종사자 등의 과도한 법정 교육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시설·장비 기준 완화)** 인허가·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를 임차하거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영 비용 부담 완화

II. 주제별 · 유형별 정비안

1 자기완결적 신고 확대

가. (유형 1-①) 실체적 요건 규정이 없는 영업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 (대상) 업의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신고에 대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법령에서 실체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청에 일정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필요

- (정비안) ‘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정비 예시

▶ 계량기 수입업 신고 부담 완화 (「계량에 관한 법률」, 산자부)

현행 계량기 수입업을 하려면 계량기의 종류·제조국, 수입업자 성명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 7일 이내 수리여부 통지(실체적 요건 규정이 없음)

개선 신고만 하면 계량기 수입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나. (유형 1-②)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 (대상) 경미한 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형식적 사항)의 변경에 대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정비안) ‘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정비 예시

▶ 외국가스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부담 완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자부)

현행 외국가스용품 제조업 등록사항 중 상호,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3일 이내 수리여부 통지

개선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붙임] 정비대상 법령 목록

□ 자기완결적 신고 확대

연 번	부처	법령명	대상 조문	내용	유 형
43	해수 부	수산업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고어업	①
44			제71조제3항·제4항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	①
45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내수면 어업 신고	①
46		항만법	제10조제7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②
47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	어업허가 변경신고	②
48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양식업허가 변경신고	②
49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고	②